

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처리기간 3일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
	주소	(전화번호:)	
자격증	종류	번호	
	발행처	발행일자	

「축산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

귀하

제출서류	1. 「축산법」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시험합격증 사본 1부 2. 「축산법」 제12조제2항제2호·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	수수료 (수입증지) 6,000원
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유의사항

- 1. 자격증란은 해당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.
- 2. 「축산법」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.
- 3. 제출서류로 내는 건강진단서에는 신청인이 「축산법」 제12조제2항제2호·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증명되어 있어야 합니다.